

의안번호	2215650
의 퇴 인	손명수의원
회 답 일	2026. 4. 17.
추계번호	25B7304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상조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억 6,200만원(연평균 3억 5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지상조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(안 제31조의2·제61조)	436	322	328	335	342	1,762	353

주: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전검사 실시계획(안)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안전검사의 대상 및 방식, 실시횟수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의2(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)	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(제1항) 6. <u>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것</u> ※ 현행은 ‘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’으로 규정	의무규정
2	안 제31조의4(관리 점검 및 조사 등)	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안전검사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	재량규정
3	안 제6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 신설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1조의2(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)	○	•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2	안 제6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	
3	안 제31조의4(관리 점검 및 조사 등)	—	•미대상 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국토교통부 자체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, 별도의 소요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지상조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, 국가가 해당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 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¹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6. 3.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	2.3	2.0	2.0	2.0	2.0	2.0

(단위: %)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행법²⁾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³⁾로 하여금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조업차량 등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현재 안전검사는 지상조업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(인천공항, 김포공항),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출장점검(인천·김포공항 외 13개 공항)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
- 개정안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로 하여금 지상조업차량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전검사 실시계획(안)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계함
 - 안전검사는 현재 15개 공항에서 운행 중인 지상조업차량⁴⁾ 등 차량 및 장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해당 검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
2) 제31조의2(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)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6.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

3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1의2. “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”란 「항공보안법」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(이하 “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에서 공항시설의 유지·보수, 항공기에 대한 정비·급유,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,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가. 공항운영자

나.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(이하 “항공운송사업자”라 한다), 같은 조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

다. 「항공보안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상주업체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, 기관 또는 단체

4) 활주로, 유도로 및 계류장 등에서 항공기 견인, 급유, 화물수송 등을 위해 운행하는 특수차량 등으로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개 공항에 약 2,900대의 특수차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

[표 2] 국토교통부의 지상조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계획(안)

구 분		내 용	비 고
개 요		•(검사대상) 15개 공항에서 운행 중인 지상조업차량(약 2,900대) 등 차량 및 장비 •(검사내용)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기준에 준하는 지상조업차량 등 안전 검사 •(실시시기) 각 공항별 연 1회 실시	
소요 비용 (연간)	검사장비 도입	•2,000만원×6대=1억 2,000만원	- 특수차량 등 검사장비 도입 - 추계기간 첫 해에만 발생
	검사장비 유지관리	•유지보수: 150만원×6대=900만원 •이동검사소 운영 차량 임대: 100만원×6대×12개월=7,200만원	- 유지보수요율: 7.5%(대당)
	검사원 교육훈련	•검사원 교육 및 컨설팅: 500만원×2회=1,000만원	
	출장비	•여비: 37,500원×12명×220일=9,900만원 •숙박비: 7만원×12명×110일=9,240만원 •교통비: 20만원×3명×12일=720만원(제주도 출장비) •차량 유류비: 265만원×6대=1,590만원	- 2인 1팀(6개팀 운영)
	부대비용	•사무용품 등: 20만원×12개월=240만원 •통행료 및 통신요금: 770만원	
	합 계	4억 3,560만원	- 추계 첫해 기준

주: 소요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수차량 등 검사 및 출장 단가 적용
 자료: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

□ (추계 결과) 개정안에 따라 지상조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억 6,200만원(연평균 3억 5,300만원)으로 추계됨

○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[표 4] 지상조업차량 등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 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검사장비 도입	120	-	-	-	-	-	-
검사장비 유지관리	81	83	84	86	88	-	-
검사원 교육훈련	10	10	10	11	11	-	-
출장비	215	219	223	228	232	-	-
부대비용	10	10	11	11	11	-	-
합 계	436	322	328	335	342	1,762	353

주: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전검사 실시계획(안)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안전검사의 대상 및 방식, 실시횟수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전검사 실시계획(안)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안전검사의 대상 및 방식, 실시횟수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